

## 不 動 產 賣 買 契 約 書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                             |
|---------|-----------------------------|
| 부동산의 표시 | 서울 은평구 불광동 721 잡종지 3,720 m² |
| 계 약 내 용 | 소유권이전                       |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                                           |    |  |
|-------|-------------------------------------------|----|--|
| 매매대금  | 금 五億參仟萬圓整(₩530,000,000)                   | 單價 |  |
| 계 약 금 | 금——參仟萬圓整(₩30,000,000)은 계약 시 지불하고          |    |  |
| 중 도 금 | 금——圓整은——년——월——일 지불하며                      |    |  |
| 잔 금   | 금——五億圓整(₩500,000,000)은 2016년 3월 31일 지불한다. |    |  |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여야 하며, 또한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특약사항 : ①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② 매수인은 잔금 5억 원을 2016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에는 매월 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③ 이석환(611108-2369301)는 위 잔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

위와 같이 약정함 이석환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16년 2월 1일

|     |        |                 |    |              |    |     |  |
|-----|--------|-----------------|----|--------------|----|-----|--|
| 매도인 |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14길 15 |    |              |    |     |  |
|     | 주민등록번호 | 520519-1027513  | 전화 | 02-723-1607  | 성명 | 엄진수 |  |
| 매수인 | 주 소    | 인천 북구 십정로 55    |    |              |    |     |  |
|     | 주민등록번호 | 690417-2249616  | 전화 | 031-668-2905 | 성명 | 최정수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토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721

고유번호 1105-2009-162579

|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             |                   |     |        |                                               |
|--------------------|-------------|-------------------|-----|--------|-----------------------------------------------|
| 표시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 지 목 | 면 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br>(전 4)         | 2009년 7월 5일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721 | 잡종지 | 3,720㎡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3월 17일 전산이기 |

|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                 |                                                                                           |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br>(전 7)           | 소유권이전 | 2009년 9월 10일 제30291호 | 2009년 8월 10일 매매 | 소유자 엄진수 520519-1027513<br>서울 종로구 관철동 251<br>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3월 17일 전산이기 |
| 2                    | 소유권이전 | 2016년 2월 11일 제2007호  | 2016년 2월 1일 매매  | 소유자 최정수 690417-2249616<br>인천 북구 십정로 55                                                    |

|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                                                                                                       |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                           | 근저당권설정 | 2016년 3월 30일 제3059호 | 2016년 3월 29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br>채무자 최정수<br>인천 북구 십정로 55<br>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 207456-2469325<br>서울 중구 청계천로 84 |

— 이 하 여 백 —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  
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18년 09월 11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인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003567052010964627SUEY603943RTO16858126088 1/1 발급확인번호 RTPQ-KAAA-2965 발행일 2018/09/11

대 법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화해조서

사 건 2016자1209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 청 인 엄진수 (520519-1027513)

서울 종로구 종로14길 15

대리인 변호사 윤재풍

피신청인 이석화 (611108-2369301)

서울 서초구 샴마루길 25

판 사 박문안

기 일 : 2016. 3. 23. 10:00

장 소 : 제503호 법정

법원주사 최화석

공개여부 : 공 개

신 청 인 대리인 변호사 윤재풍

출석

피신청인 이석화

출석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

## 화해조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0-4 잡종지 300㎡에 관하여 2016.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화해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청 구 의 표 시

### 신 청 취 지

위 화해조항과 같은 취지의 신청을 구함

###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2016. 2. 1. 서울 은평구 불광동 721 잡종지 3,720㎡를 신청의 취

정수에게 대금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최정수는 위 토지에 병원을 지을 예정이고 신청인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위 토지를 이전등기 해주면 이를 담보로 용자를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으니 등기를 먼저 넘겨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를 응낙하고 당일 계약금 3,000만 원만 받고 최정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2. 당시 최정수는 늦어도 2016. 3. 말까지는 잔금 5억 원을 지급하되 지연 시에는 매월 1%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3. 피신청인과 최정수는 2016. 3. 20.경 신청인을 찾아와, 사정이 생겨 2016. 3. 말까지 잔금 지급이 어려우니 이를 2016. 12. 말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2016. 4. 1.부터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위 요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위 연대보증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소유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0-4 잡종지 300㎡를 매매의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4. 이에 당사자 쌍방은 위 화해조항과 같이 화해를 하기로 하고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법원주사 최 화 석 ㉡

판 사 박 문 안 ㉡

정 본 입 니 다.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최 화 석

